

시 방 서

공사명 : 중부 수도사업소 청사 증축공사

(소화설비)

2009년 02월

(주)경진 건축사사무소

▣ 목 차 ▣

1. 일 반 사 항
2. 소 화 기 설비공사 시방서
3. 피난기구(완강기) 설비공사 시방서

1. 일 반 사 항

1. 적 용

- 1) 본 공사의 시방은 이 표준 시방서에 의한다. 단, 본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2) 공사장에서 직공, 인부 기타 출입인이 단독의 화기취급 등 보안 위생에 대한 세밀한 주의로서,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이며 만약 사고 시에는 수급자가 신속히 응급조치를 취한다.
- 3) 본 공사에 소요되는 수도, 전기 인입 및 사용료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.
- 4) 본 공사 시공상 건축물 등을 파괴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현장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이의 없이 즉시 원상태로 복구한다.
- 5) 재료 및 제작품은 현장 감독의 검사 또는 시험을 받은 후 사용할 것이며, 필요시에는 사전에 견품 또는 현장 취부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6) 설계 도서 시방서 및 내역서 등의 해석은 현장 감독관이 행하며 설계도의 오차, 누락 등이 있을 경우 현장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에는 추가 또는 변경 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.
- 7) 본 공사장내에 감독관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직공이나, 감독원이 미숙련공으로 인정한 직공과 인부의 교체를 요구하면 즉시 이에 순응하여야 한다.
- 8) 공사 시공 중에도 모든 재료를 항상 정리하여 현장 내외를 깨끗이 청소할 것이며, 공사완성 후에는 가설물 철거, 기타 잔재 일체를 현장 외로 반출한 후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.
- 9) 공사 현장에는 본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상주케 하고 그중 1인을 현장 대리인으로 한다.
- 10) 수급자는 설계도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만약 설계도에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11) 본 공사의 시공용 재료는 K.S를 득한 품종은 K.S 규격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.
단, K.S 규격이 없는 재료는 공인기관의 형식승인 또는 공인된 제품으로 감독관의 지시 하에 설치하여야 한다.
- 12) 건물 공사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지정된 공기 내에 시공하여야 한다.

2 . 소화기구 설치공사

2.1. 적용범위

: 본 시방서는 소화기구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화재안전기준(NFSC 101)을 준용하여 적용한다.

2.2. 자재 및 설치기준

가. 소방자재의 검정등

- ①. 소화기구는 한국 소방검정공사의 검정을 득한 제품으로 설치한다.
- ②. 소화기구는 아래 기준이상의 제품으로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설치한다

구 분	약 제 량	용도 및 설치장소	비 고
분말 소화기	A.B.C 3.3kg	A.B.C급 일반화재, 거실 및 복도	
CO2 소화기	10 LBS	C급 전기화재용, 전기관련시설	
하 론 1301	3.0kg	C급 전기화재용, 방재실등	
자동확산소화기	A.B.C 3kg	A.B.C급, 보일러실등 화기취급	
자동식 소화기	강화액 0.8LIT	아파트 단위세대별 주방	

나. 소화기구의 설치기준

- ①. 소방대상물의 각층마다 설치하되, 1개의 수동식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는 소형 수동식소화기의 경우 20m이내, 대형 수동식소화기의 경우 30m이내가 되도록 설치한다.
- ②. 소방대상물의 각층이 2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각층마다 설치하는 것외에 바닥면적이 33㎡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(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)마다 설치한다.
- ③. 소화기구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.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, 수동식 소화기에 있어서는 “소화기” 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곳에 설치한다.

2.3. 시험 및 검사

가. 설치상태 및 성능시험검사

- ①. 소화기구의 설치상태는 설계도서의 수량 및 설치장소를 확인하고 검사한다.
- ②. 소화기구의 구조, 위치 등을 확인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한 별지 제30호 서식의 소방시설성능시험조사표에 의거하여 기능 및 성능검사를 실시한다.

3 . 피난기구 설치공사(완강기)

3.1. 적용범위

: 본 시방서는 피난기구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화재안전기준(NFSC 301)을 준용하여 적용한다.

3.2. 자재 및 설치기준

가. 소방자재의 검정등

- ①. 피난기구는 한국 소방검정공사의 검정을 득한 제품으로 설치한다.
- ②. 피난기구는 아래 기준이상의 제품으로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설치한다.

품 명	동작 원리	적용장소	비 고
완 강 기	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으로 연속사용 가능	기타 건축물	
간이 완강기	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으로 사용 연속 불가능	숙박시설	
공기안전매트	화재시 건축물내에서 외부로 뛰어 내릴때 충격흡수 사용	아파트	

나. 피난기구의 설치기준

- ①. 소방대상물의 각층마다 설치하고 다음기준에 의한 바닥면적마다 1개소이상을 설치한다.

용도 구분	산 출 수 량	비 고
숙박시설,노유자시설,의료시설로 사용되는 층	500㎡ 마다 1개소 설치	
위락시설,문화집회 및 운동시설,판매시설,복합용도층	800㎡ 마다 1개소 설치	
계단실형 아파트 세대	각세대 마다 1개소 설치	
그 밖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	1,000㎡ 마다 1개소 설치	

- ②.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아파트 구역마다 공기안전매트를 1개이상을 설치한다.
- ③.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 직선상에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한다.
- ④. 피난기구는 소방대상물의 기둥, 바닥, 보, 기타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볼트조임 매입, 용접 기타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.
- ⑤. 완강기는 강하시 로프가 소방대상물에 접촉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, 피난로프의 길이는 부착위치에서 지면등 피난상 유효한 착지면까지 달을 수 있는 길이로 설치한다.

- ⑥. 피난기구가 설치되는 장소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쉬운 곳에 위치를 표시하는 발광식 또는 축광식의 표지와 피난기구의 사용법을 설명하는 사용설명서를 부착하여 설치한다.

3.3. 시험 및 검사

가. 설치상태 및 성능시험검사

- ①. 피난기구의 설치상태는 설계도서의 수량 및 설치장소를 확인하고 검사한다.
- ②. 피난기구의 구조, 위치 등을 확인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한 별지 제30호 서식의 소방시설성능시험조사표에 의거하여 기능 및 성능검사를 실시한다.